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02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백혜련 · 이재강 · 박지원
서영석 · 민홍철 · 진선미
이재정 · 남인순 · 강준현
이수진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외국국적동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가정폭력 행위자인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및 추가피해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가정

폭력행위자에 대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같은

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교부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급·열람 제한 및 해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피해자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 “교부제한 대상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u> <u>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국내</u>

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
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같
은 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
실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교부제한대
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
급·열람 제한 및 해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